

특정감사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2년 해빙기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 –

2022. 4. .



#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 번호 | 소 관   | 건 명                 | 행정상 조 치 |    | 재 정 상 조 치 |    |     |    |     |    |
|----|-------|---------------------|---------|----|-----------|----|-----|----|-----|----|
|    |       |                     | 시정      | 주의 | 회 수       | 금액 | 감 액 | 금액 | 추 징 | 금액 |
| 계  |       | 2건                  | 2       | 0  | 0         | 0  | 0   | 0  | 0   | 0  |
| 1  | ◆◆◆◆◆ |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 1       |    |           |    |     |    |     |    |
| 2  | ◆◆◆◆◆ |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1       |    |           |    |     |    |     |    |

# 2. 처분요구일람표

- 1.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1
- 2.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시정) ..... 4

|            |       |          |          |               |
|------------|-------|----------|----------|---------------|
| 일련번호       | 1     |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
| 신분상 조치인원   |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수감부서(처리부서) |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천 하천재해예방사업」를 아래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 사업현황

| 공사명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 계약일         | 사업기간                     | 도급자     | 비고 |
|--------------|-----------------------|------------|--------|-------|-------------|--------------------------|---------|----|
|              |                       | 계          | 도급     | 관급    |             |                          |         |    |
| △△천 하천재해예방사업 | 하 천 정 비<br>(L=3.85km) | 17,700     | 13,427 | 3,273 | 2019.12.27. | 2020.1.13~<br>2024.5.14. | ◎◎종합건설주 |    |

### 1. 호안옹벽블록 뒤채움 시공 등 공사감독 소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에 따르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 2. 24.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 대비 공사 현장 특정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2022. 2. 25.) 식생옹벽블록(L=60m, H=1.0m) 구간에 대해 아래 [사진]과 같이 뒷채움 잡석을 시공<sup>1)</sup>하지 않았으며 폐콘크리트가 일부 혼입<sup>2)</sup>하여 되메우기 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진] 부적정 시공 현황**

|            |          |
|------------|----------|
|            |          |
| 뒷채움 잡석 미시공 | 폐콘크리트 혼입 |

**2. 동절기 중지기간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에 따르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

1) L=60m, H=1.0m - No.5~No6+20(우안)  
재시공 비용 000천 원 정도 소요(예상)  
2) 기존 석축 철거시 잔여물

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 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절기 중지 기간에 시공할 때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시공자로 하여금 관리토록 하고 공사감독은 이를 확인했어야 했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2022. 2. 25.) □□ 제2잠수교, 16,17 낙차 옹벽벽체, □□ 제12낙차공 등에 대해 동절기 중지 기간에 시공사가 공사감독 승인 없이 임의로 주요 구조물에 대해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하였는데도 공사감독은 현장 출장 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 입회하거나 품질관리 적정성에 대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설계도서와 다르게 뒷채움 없이 시공한 호안옹벽블럭 구간은 채시공 하고 일부 혼입된 폐콘크리는 적법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       |          |          |               |
|------------|-------|----------|----------|---------------|
| 일련번호       | 1     | 감사자      |          | 공개(○), 비공개( ) |
| 신분상 조치인원   |       | 재정상 조치방법 | 재정상 조치금액 | -             |
| 수감부서(처리부서) | ◆◆◆◆◆ | 처분요구일자   | 회신기일     |               |

# 경 상 북 도

## 시 정 요 구

제 목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시  
 관 계 부 서 ◆◆◆◆◆  
 내 용

○○시 ◆◆◆◆◆에서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아래 [표1]과 같이 추진 중에 있다.

[표1] 사업현황

| 공사명         | 사업량                           | 사 업 비(백만원) |       |       | 계약일             | 사업기간                         | 도급자       | 비고 |
|-------------|-------------------------------|------------|-------|-------|-----------------|------------------------------|-----------|----|
|             |                               | 계          | 도급    | 관급    |                 |                              |           |    |
| ○○○소하천 정비사업 | 소하천정비<br>L=4.45km<br>교량 7개소 등 | 7,141      | 4,726 | 2,415 | 2017.<br>12.04. | 2017.12.11<br>~<br>2022.4.8. | □□종합건설(주) |    |

### 1. 하천 호안 주요구조물 시공 부적정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에 따르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제방 쌓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최대치수는 100mm 이내로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출장 시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서류 등과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하였어야 했다. 그러나, 해빙기 안전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기간 중 현장을 확인한 결과(2022. 2. 24.) 하천공사의 주요구조물인 제방 쌓기에 부적합한(100mm 이상 일부포함) 재료로 성토<sup>3)</sup>하거나 호안블록 부직포 미설치<sup>4)</sup>, 설치된 호안블록이 파손<sup>5)</sup>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품질관리자 미배치 등 품질관리 부적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르면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 이상 전문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험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득한 후 착공 전 발주자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선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별표 5]에 따르면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는 품질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시험·검

3) L=340m - NO.183+0~NO.200+0(좌안)

4) 부직포 NO.197+0~NO.200+0(좌안) 재설치 비용 000천원

5) 호안블록(8EA) 재설치 비용 000천원

사장비를 구비하고, 20m<sup>2</sup> 이상의 시험실 설치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초급기술인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고용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시공단계에서 품질 확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확인·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는 초급 품질관리 대상 공사 착공 시 품질관리자 1명 이상을 포함한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가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2022. 2. 24.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 대비 공사 현장 특정감사일 현재 시험장비를 일부 구비하지 않고, 시험실 배치계획이 누락, 품질시험수량이 설계내역서와 상이 등 품질시험계획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도 없었고 품질시험계획을 승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또한 품질관리인으로 선임된 ☆☆☆에 대하여 2022. 2. 24. 감사일 현재 제출된 경력증명서를 확인해 본 결과 아래 [표 2]와 같이 다른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2차례 선임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아무런 확인조차 없는 등 품질관리가 소홀하게 운영되고 있다.

#### [표 2] 품질관리자 배치현황

| 선임일       | 품질관리자 | 등급 | 경력증명서 제출내용 |
|-----------|-------|----|------------|
| 2018.5.10 | ☆☆☆   | 초급 |            |

###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부적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9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위 소하천 정비공사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0000.00.0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회신 공문(대구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000)에 따르면 ‘○○○소하천 정비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5.3.1. ‘수질’에서는 공사 중 하천 구간에 대한 수질 저감방안으로 교량 공사시 터파기, 가도 설치 등으로 인하여 토사유출이 예상되므로 오탁방지막 및 가물막이 등을 설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을 저감대책을 이행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저감대책으로 제시된 가물막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24. 경상북도 감사관실에서 실시한 해빙기 안전 대비 공사현장 특정감사시 교량 공사 터파기시 토사유출로 인한 흙탕물이

발생하여 하류로 흘러가는데도 오탁방지막 등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그 결과 위 건설공사 현장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리가 소홀히 운영되고 있다.

#### **조치할 사항 ○○시장은**

- 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 ②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호안블럭 및 부직포는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재시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③ 품질시험계획 미승인, 품질시험장비 미비, 품질관리인 미배치 등 품질관리 소홀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 ④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소홀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